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안년월일 : 2005. 8. 5
제안자 : 최광렬의원의 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991호 2005.8.5)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개정(안 제3조제2항)
(회기일수 1일 70,000원 ⇒ 100,000원)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별표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기수당지급)</p> <p>① (생 략)</p> <p>② ----- 70,000원</p> <p>-----.</p>	<p>제3조(회기수당지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100,000원</p> <p>-----.</p>